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4. 25(목) 10:00

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
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04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4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4. 15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3. 6. 13. 공포 및 시행)에 따라 “고독사”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, 고독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고독사” 및 “사회적 고립가구”에 대한 정의 변경(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)
- 나. 조례 적용 범위 확대(안 제4조)
- 다. 지원 대상 범위 확대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상위법령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3. 6. 13. 공포 및 시행)에 따라 고독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나. 주요 내용

1) “고독사” 및 “사회적 고립가구”에 대한 정의 변경(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)

○ 상위법령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3. 6. 13. 공포 및 시행)에 따라 “고독사”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함

2) 조례 적용 범위 확대(안 제4조)

○ 1인 가구를 가구로 변경하여 2인 이상 가구를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함

3) 지원 대상 범위 확대(안 제7조)

다. 검토의견

○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, 사망자의 연령대가 고령자 중심에서 50대~60대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,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음.

< 최근 5년 간 고독사 발생 현황 >



(출처 : 보건복지부)

□ 최근 3년 복지대상자 고독사 현황 (동향보고 기준)

(단위: 명)

구분	계	인적 특성							사망 경위								
		성별		연령별					사망원인			발견경로			발견시간*		
		남	여	40세 이하	41~50세	51~60세	61~64세	65세 이상	병사	자살	기타	집주인	가족	이웃등	3일 이내	7일 이내	7일 이상
총 계	58	45	13	1	1	17	14	25	49	9	1	6	4	48	46	7	7
2023	15	15	-	-	-	5	4	6	15	1	-	-	-	15	11	3	1
2022	11	7	4	1	-	4	1	5	8	3	-	1	1	9	7	1	3
2021	32	23	9	-	1	8	9	14	26	5	1	5	3	24	28	2	2

※서울시 고독사 기준 : 사망한 지 3일 이후 발견되는 시신

○ 홀로 사는 1인가구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가구도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, 고독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[약칭: 고독사에방법]

[시행 2024. 3. 15.] [법률 제19716호, 2023. 9. 14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3. 6. 13., 2024. 2. 6.>

제3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(이하 “고독사위험자”라 한다)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